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 4. 13.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6. 4. 16.
- 다. 상 정 일 자 : '96. 4. 29. (제44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내무과장 이 병 일

나. 제안이유

- 한천산림욕장이 산림청고시 제1996-8호 ('96. 2. 24)로 한천자연휴양림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변경

다. 주요내용

○ 제명변경

- ┌ 현행 :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
- └ 개정 : 화순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설치조례

○ 용어개정 (안 제1조 및 제3조)

- 휴양림 및 산림욕장 → 백아산 자연휴양림 및 한천 자연휴양림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재휴)

- 본 조례 개정안은 산림청 고시에 의거 한천 산림욕장이 자연휴양림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제명,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4.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부 :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 년월일 : 1994. 4. .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 날로 급증하고 있는 한천 산림욕장을 휴양 수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림법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되어 화순군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로 제명을 개정하기 위함.

2. 개정근거

- 산림청 고시 제1996-8호 ('96. 2. 24)
한천산림욕장을 한천자연휴양림으로 신규 지정

3. 주요골자

- 제명 :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를 "화순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로 제명 개정
- 조례중 "한천산림욕장" 을 "한천자연휴양림" 으로 내용을 개정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 를 "화순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설치조례" 로 한다.

제1조중 "한천 산림욕장" 을 "한천자연휴양림" 으로 하고 "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 을 "화순군자연휴양림" 으로 한다.

제3조중 "휴양림및산림욕장" 을 "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자연휴양림" 으로 하고 제1항중 "및 산림욕장의 종합개발" 을 "조성관리운영" 으로 하며 제7항중 "및 한천산림욕장" 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u>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u> <u>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u></p>		<p>제명 : 화순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설치조례</p>	
<p>제1조 (설치) 화순군 백아산자연휴양림 및 <u>한천산림욕장</u> 조성관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휴양림지구내의 행정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u>백아산 자연휴양림 및 한천 산림욕장</u> 관리사업소 (이하 "사업소" 라 한다) 를 둔다.</p>		<p>제1조 (설치) - - - - - 한천자연휴양림 - - - - - - - - - - (중략) - - - - - - - - - - 화순군 자연휴양림 - - - - - - - - - - - - - - -</p>	
<p>제3조 (업무) 사업소는 <u>휴양림 및 산림</u> <u>욕장</u> 지구내의 다음 업무를 각호와 같이 관장한다.</p>		<p>제3조 (업무) 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 자연휴양림 - - - - - - - - - -</p>	
<p>제1항 휴양림 및 <u>산림욕장</u>의 종합개 발 및 휴양자원의 보호관리 제7항 기타 휴양림 및 <u>한천산림욕장</u> 기능 유지 저해행위 예방 및 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p>		<p>제1항 - - - 조성관리운영 -</p>	